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006-10

2021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1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I



부패영향
평가 제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8
2. 부패영향평가 기준	10
3. 부패영향평가 업무 처리절차	14
4. 2021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18

II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1. 평가기준별 사례

1)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0
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34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7
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41

(2) 제재규정의 적정성

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46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49
3. 산지관리법 시행령	53
4. 특허법 시행규칙	56

(3) 특혜발생 가능성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63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69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3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80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7
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90
5. 행정사법 시행규칙	93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96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101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3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105
4. 지방재정법 시행령	109
5.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3) 재정누수 가능성

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116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0
3. 소프트웨어 진흥법	123

Contents

II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7
-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
- 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133
-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35

(2) 공개성

- 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141
- 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143
- 3.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147
- 4. 물환경보전법 150
-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52

(3) 예측 가능성

- 1.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159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1
-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64
- 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7
- 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69

II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174
2.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177
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9
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2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4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9
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92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196
2. 철도안전법 시행령	198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201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4

III

참고자료

1.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2. 관련 법령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 (2)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 I



2021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1

부패영향평가 제도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8
2. 부패영향평가 기준	10
3. 부패영향평가 업무 처리절차	14
4. 2021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18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1



부패영향평가 의의

- ▶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를 사전에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부패영향평가 목적

- ▶ 법령 내 불필요하게 사용된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 법제도에 있어서 부패발생에 취약한 분야의 본질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 법령 입안·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재량을 적정화하고,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및 법령의 예측 가능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 ▶ 사안별 사후 적발 및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부패발생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가 있음
-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가 필요함

-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6. 4. 1.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부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자료요청, 평가결과의 통보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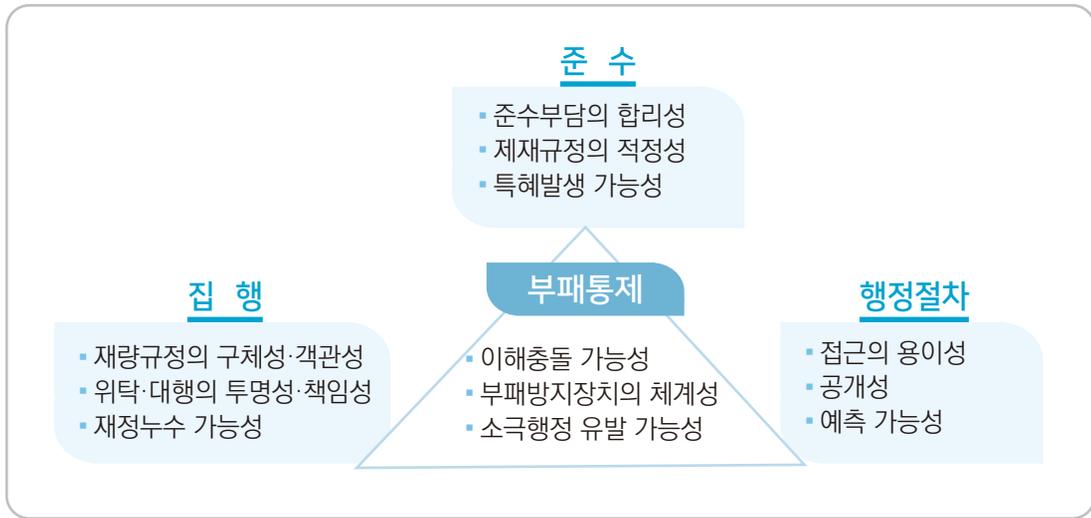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패영향평가 기준 (영 제30조제1항)

2

- ▶ 평가 기준은 크게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
 - ‘준수’는 행정의 수요자(민원인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특혜발생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집행’은 해당규정이 행정의 공급자(처분권자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행정절차’는 해당 규정이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해 부패발생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부패통제’는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등 행정절차 전반에 걸쳐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패통제장치 및 부패방지 법령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며,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 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 침해,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준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 체 성 객 관 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 탁 · 대 행 의 투 명 성 책 임 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 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 정 누 수 가 능 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 근 의 용 이 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익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에 있어 이해 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 개 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 측 가 능 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영향평가 업무 처리절차

3

1. 부패영향평가 요청

1)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
-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 ⇒ 참고 :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3조의2

2) 평가요청 시 제출할 자료

구분	제출할 자료	비고
일부개정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문별 개정이유서 •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공청회 자료, 연구 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제정·전부개정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 ▶ 행정기관의 법령입안 주무부서는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
-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1) 평가기간

-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실시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 기간 연장 가능
-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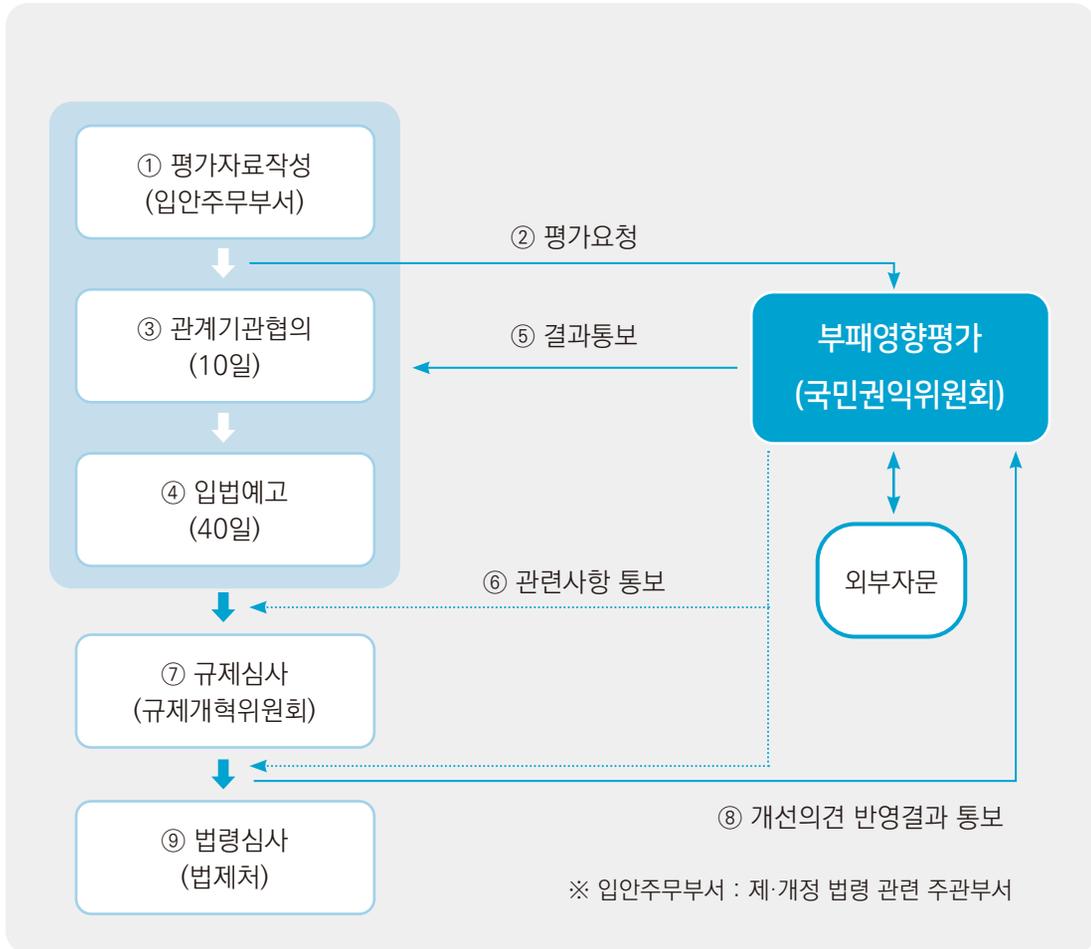
2) 평가방법

-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하여 각 업무에 활용토록 할 수 있음

3) 평가결과의 처리

-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시 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 상황 및 협조 이행상황을 확인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 시 첨부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 관련 의견 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2021년도 부패영향평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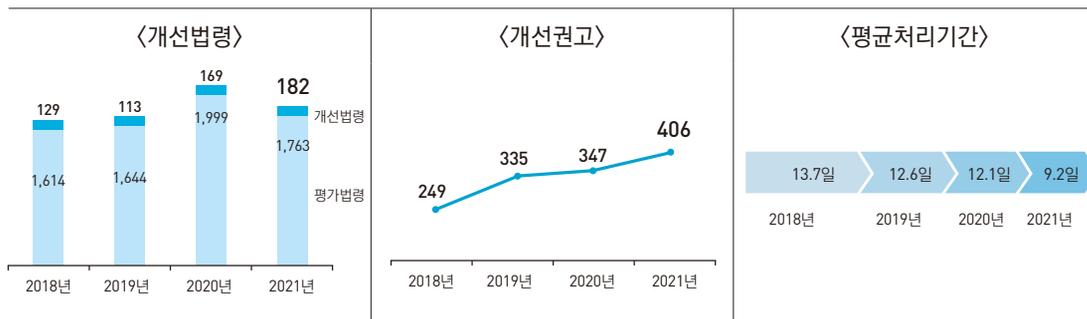
4

추진성과

부패유발요인을 더 많이 찾아 개선하고 보다 신속히 처리

- ▶ '21년에는 최근 3개년 중 최다의 제·개정법령 개선 조치
 - 1,763개 법령을 평가하고 10.3%인 182개 법령 406건에 대해 개선권고
 - '18년 대비 개선법령은 41.1%p(전년대비 7.7%p), 개선권고는 63.7%p(전년대비 17.0%p) 증가

- ▶ 평가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소요기간 지속 단축
 - 평균처리기간은 9.2일로 '18년 대비 4.5일(전년대비 2.9일) 앞당김



법령을 대거 정비하여 공공부문의 부패발생 근본요인 제거

- ▶ (법령종류별) 개선법령은 대통령령(116개, 63.7%)이 가장 많고, 총리령·부령(48개, 26.4%), 법률(18개, 9.9%) 순임
- ▶ (법령분야별) 환경보건(54개, 29.7%)과 산업개발(39개, 21.4%) 및 일반행정(38개, 20.9%)이 전체의 72%를 차지
- ▶ (평가기준별) 이해충돌 가능성 기준에 따른 권고(127건, 31.3%) 최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부패유발제도 개선

- ▶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관련 심의기구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을 구체화하여 소상공인 지원 공정성 제고
- ▶ 신용보증자의 연체보증료율 산정기준을 공개하여 행정 투명성 강화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에 연안항 추가 등 소극행정 예방



평가실적 세부현황

접수 현황

- ▶ '21년에는 총 1,754개의 제·개정법령이 평가의뢰 접수되었음
- ▶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이 52.2%인 916개로 가장 많았음
※ 대통령령 916개(52.2%) → 총리령·부령 704개(40.2%) → 법률 134개(7.6%)

제·개정법령 접수 현황('06.4.~'21.)

(단위 : 개, %)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 부령	행정규칙
전체기간 ('06.4.~'21.)	24,329(100)	4,286(17.6)	10,961(45.1)	8,946(36.8)	136(0.6)
'18년	1,631(100)	204(12.5)	798(48.9)	610(37.4)	19(1.2)
'19년	1,654(100)	132(8.0)	822(49.7)	692(41.8)	8(0.5)
'20년	1,965(100)	333(16.9)	904(46.0)	722(36.8)	6(0.3)
'21년	1,754(100)	134(7.6)	916(52.2)	704(40.2)	-

■ 개선권고

- ▶ '21년에는 평가의뢰 된 1,763개*의 제·개정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406건의 개선권고를 하였음

* '20년 말에 접수되어 '21년으로 이월된 33개 법령 포함, '21년 말에 접수되어 '22년으로 이월된 24개 법령 제외

- ▶ 최근 3개년 평균(310건)에 비해 31.0%p(96건)가 늘어난 것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18년대비 158건 63.7%p, 전년대비 59건 17.0%p 증가)

개선권고 현황('06.4.~'21.)

(단위 : 개, %)

구분	전체기간 ('06.4.~'21)	'18년	'19년	'20년	'21년	증감 (전년대비)
평가법령	24,304	1,614	1,644	1,999	1,763	11.8 ↓
개선법령	2,764	129	113	169	182	7.7 ↑
개선권고	6,633	248	335	347	406	17.0 ↑
개선권고율	27.3	15.4	20.4	17.4	23.0	32.0 ↑

■ 처리기간

- ▶ 제·개정법령의 부패영향평가에 소요된 평균처리기간은 9.2일로 전년 대비 2.9일(전체 기간 평균대비 4.7일) 단축 처리

- 개선법령은 전년 대비 5.4일(전체기간 평균대비 6.5일)을 단축하여 평균 15.5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

- ▶ 평가 소요기간을 평균 10일 이내로 단축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06년 이후 최초

부패영향평가 처리기간('06.4.~'21.)

(단위 : 개, 일)

구분	전체 평가법령		개선법령		원안법령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법령수	처리기간
전체기간 ('06.4.~'21.)	24,304	14.5	2,764	23.1	21,540	13.2
'18년	1,614	13.7	129	22.0	1,485	13.0
'19년	1,644	12.6	113	16.3	1,531	12.4
'20년	1,999	12.1	169	20.9	1,830	11.3
'21년	1,763	9.2	182	15.5	1,581	8.5

■ 개선법령

① 법령종류별

- ▶ 1,763개의 부패영향평가 대상법령 중 전년(169개) 대비 7.7% 증가한 182개의 개선 법령을 발굴
- ▶ 182개 개선법령 중 대통령령이 가장 많은 63.7%인 116개로 나타났고, 총리령·부령(48개, 26.4%), 법률(18개, 9.9%) 순이었음
- ▶ 평가법령 대비 개선법령 비율은 법률(13.2%), 대통령령(12.6%) 순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법률에서 개선율이 높게 나옴

법령종류별 개선법령('06.4.~'21.)

(단위 : 개, %)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전체기간 (‘06.4.~’21.)	계	24,304	4,287 (100)	10,952(100)	8,925(100)	140(100)
	개선법령	2,764	686 (16.0)	1,352(12.3)	696(7.8)	30(21.4)
	원안법령	21,540	3,601(84.0)	9,600(87.7)	8,229(92.2)	110(78.6)
'18년	계	1,614	202 (100)	785(100)	608(100)	19(100)
	개선법령	129	20(9.9)	69(8.8)	40(6.6)	-
	원안법령	1,485	182(90.1)	716(91.2)	568(93.4)	19(100)
'19년	계	1,644	132(100)	827(100)	678(100)	7(100)
	개선법령	113	12(9.1)	75(9.1)	24(3.5)	2(28.6)
	원안법령	1,531	120(90.9)	752(90.9)	654(96.5)	5(71.4)
'20년	계	1,999	336(100)	916(100)	740(100)	7(100)
	개선법령	169	23(6.8)	106(11.6)	40(5.4)	-
	원안법령	1,830	313(93.2)	810(88.4)	700(94.6)	7(100)
'21년	계	1,763	136(100)	920(100)	707(100)	-
	개선법령	182	18(13.2)	116(12.6)	48(6.8)	-
	원안법령	1,581	118(86.8)	804(87.4)	659(98.2)	-

② 법령분야별

- ▶ 법령분야별로는 환경보건 29.7%(54개), 산업개발 21.4%(39개), 일반행정 20.9%(38개) 분야가 전체의 72%를 차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법령 개선이 두드러짐

- 제·개정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전체기간(산업개발 30.3%, 환경보건 21.8%, 일반행정 14.6%)과 비교하여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환경보건 분야는 복지부(31개), 환경부(13개), 산림청(6개) 등의 소관 법령으로 이전 3개년과 비교해 개선법령이 대폭 증가

※ 개선법령 수 : ('18년) 43개 → ('19년) 26개 → ('20년) 24개 → ('21년) 54개

- 산업개발 분야는 국토부(18개), 중기부(6개), 해수부(6개) 등의 소관 법령이며, 타 분야보다 평가 및 개선법령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
- 일반행정 분야는 행안부(19개), 소방청(5개), 인사처(4개) 등 소관 법령으로, 재난·재해·안전 관련 법령의 개선이 많았음

법령분야별 개선법령('06.4.~'21.)

(단위 : 개, %)

구분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 타
계 (‘06.4.~ '21.)	평가 법령	22,305 (100)	4,144 (18.6)	2,521 (11.3)	1,419 (6.4)	2,371 (10.6)	6,029 (27.0)	875 (3.9)	4,009 (18.0)	845 (3.8)	92 (0.4)
	개선 법령	2,595 (100)	378 (14.6)	331 (12.8)	138 (5.3)	189 (7.3)	787 (30.3)	137 (5.3)	567 (21.8)	61 (2.4)	7 (0.3)
'18년	평가 법령	1,614 (100)	310 (19.1)	105 (10.1)	128 (5.2)	185 (11.1)	442 (27.0)	70 (2.6)	308 (21.4)	56 (3.6)	10 (0.1)
	개선 법령	129 (100)	18 (19.2)	7 (6.5)	7 (7.9)	8 (11.5)	33 (27.4)	10 (4.3)	43 (19.1)	3 (3.5)	-
'19년	평가 법령	1,644 (100)	221 (13.4)	181 (11.0)	102 (6.2)	175 (10.6)	472 (28.7)	53 (3.2)	372 (22.6)	64 (3.9)	4 (0.2)
	개선 법령	113 (100)	12 (10.6)	15 (13.3)	-	5 (4.4)	42 (37.2)	6 (5.3)	26 (23.0)	7 (6.2)	-
'20년	평가 법령	1,999 (100.0)	324 (16.2)	177 (8.9)	127 (6.4)	208 (10.4)	663 (33.2)	63 (3.2)	322 (16.1)	114 (5.7)	1 (0.1)
	개선 법령	169 (100.0)	34 (20.1)	17 (10.1)	14 (8.3)	11 (6.5)	53 (31.4)	4 (2.4)	24 (14.2)	12 (7.1)	0 (0.0)
'21년	평가 법령	1,763 (100)	298 (16.9)	171 (9.7)	146 (8.3)	148 (8.4)	552 (31.3)	38 (2.2)	332 (18.8)	78 (4.4)	-
	개선 법령	182 (100)	38 (20.9)	22 (12.1)	11 (6.0)	15 (8.2)	39 (21.4)	2 (1.1)	54 (29.7)	1 (0.5)	-

■ 기관별 평가현황

- ▶ **(평가의뢰)** 제·개정법령 부패영향평가 의뢰 상위부처는 국토부(256개)였고, 다음으로 복지부(148개), 행안부(102개) 순으로 나타났음
- ▶ **(개선법령)** 복지부가 31개로 개선법령 수가 가장 많았고, 행안부(19개), 국토부(18개)가 그 뒤를 차지
- ▶ **(개선권고)** 개선권고도 복지부가 77건으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고, 행안부(52건), 교육부(43건) 순이었음

평가의뢰기관별 평가현황(‘21.)

(단위 : 개, 건, %)

구분	의뢰 법령	평가법령			
		계	개선법령	개선권고	원안법령
계	1,754	1,763(100)	182(10.3)	406	1,581(89.7)
1. 보건복지부	148	148(100)	31(20.9)	77	117(79.1)
2. 행정안전부	102	104(100)	19(18.3)	52	85(81.7)
3. 국토교통부	256	255(100)	18(7.1)	27	237(92.9)
4. 교육부	98	98(100)	14(14.3)	43	84(85.7)
5. 환경부	86	83(100)	13(15.7)	24	70(84.3)
기타(기재부 등 54개 기관)	1,064	1,075(100)	87(8.1)	183	988(91.9)

■ 평가기준별

- ▶ 이해충돌 가능성 기준에 따른 권고가 127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예측 가능성(82건, 20.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78건, 19.2%) 순

- ▶ 이해충돌 가능성은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권고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18년) 34건 → ('19년) 67건 → ('20년) 102건 → ('21년) 127건

- 예측가능성은 위임규정의 구체성·공개성 확보 등을,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기준은 과태료·과징금 등 부담적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 등을 주로 개선권고

- ▶ '20년에 신규 도입된 평가기준인 소극행정유발 가능성에 따른 개선권고는 6건이었음

평가의뢰기관별 평가현황('21.)

(단위 : 건, %)

분야	평가기준	'18년	'19년	'20년	'21년
계		249(100)	335(100)	347(100)	406(100)
준수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7(2.8)	8(2.4)	-	3(0.7)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33(13.3)	54(16.1)	18(5.2)	34(8.4)
	③ 특혜발생 가능성	3(1.2)	7(2.1)	2(0.6)	2(0.5)
집행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60(24.1)	101(30.1)	73(21.0)	78(19.2)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24(9.6)	17(5.1)	14(4.0)	21(5.2)
	⑥ 재정누수 가능성	5(2.0)	4(1.2)	-	2(0.5)
행정절차	⑦ 접근의 용이성	7(2.8)	23(6.9)	21(6.1)	21(5.2)
	⑧ 공개성	14(5.6)	22(6.6)	23(6.6)	24(5.9)
	⑨ 예측 가능성	47(18.9)	24(7.2)	89(25.6)	82(20.2)
부패통제	⑩ 이해충돌 가능성	34(13.7)	67(20.0)	102(29.4)	127(31.3)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5(6.0)	8(2.4)	5(1.4)	6(1.5)
	⑫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	-	-	6(1.5)

II

2021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1

제·개정 법령 평가 사례



1. 평가기준별 사례

1) 준수	28
2) 집행	77
3) 행정절차	125
4) 부패통제	172

평가기준별 사례

1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개요

-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 ▶ 준수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령 등의 적용 대상자가 뇌물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통해 그 부담을 면제 혹은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내용

- ▶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등 검토
 -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input type="checkbox"/>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사례 0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8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교육 이수
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4.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이력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그 기간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 및 방법은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 ▶ 준수부담의 합리성

현 황

-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안은 그 공개대상,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위임 조문 : 다중이용업소법 제20조의2

제20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2.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다중이용업”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법 제2조제1항제1호), 현재 행정기관에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된 다중이용업소는 177,029개로 파악되고 있음

※ 소방청에서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다중 이용 업소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될 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현황 및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조사를 시행하면 착수 7일전에 조사대상·조사기관 및 조사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제4조의3), 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이러한 조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5조 제3항)

※ 조치 명령 이행 기간이 끝난 때부터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 명령 미이행 소방 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 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

- ▶ 한편,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자 등이 소방안전교육 이수·화재 배상책임 보험 가입·안전시설 기준 충족 등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방청장 등은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에 따라 과태료나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전년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585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4건

- ▶ 이 외에, 안전시설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거나 화재위험평가 결과 위험 유발지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서(법 제 9조 제2항 및 법 제 15조 제2항) 소방청장 등이 조치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2회 이상 불이행하였으면 미이행업소면, 미이행업소의 주소, 조치한 내용, 미이행 횟수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20조 및 영 제18조)

문 제 점

- ▶ 개정안은 소방특별조사 결과공개를 법 제25조 제1항 및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로 한정하여 공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님

※ 법률 제20조의2 제2항은 공개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임

- ▶ 현행법은 제9조 제2항(안전 관리기준 미흡), 제10조 제3항(실내장식물의 기준 미흡), 제10조의2 제3항(영업장 내부우회기 기준 미흡) 또는 제15조 제2항(위험 유발지수 기준 이상)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제9조 제2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업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0조)에도
- ▶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다중이용업소는 1회의 조치 명령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 설치·유지 관리 현황(법 제9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현황(법 제11조) 및 다중이용업주의 정기 점검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13조), ‘소방안전교육 이수(법 제8조), ‘화재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법 제13조의2)”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이력’까지 공개됨으로써 소방특별 조사의 공개가 ‘제재적 성격의 공표’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고,
- ▶ 사실상 하위법령을 통해 법률 제20조가 개정되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법령 등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국민, 기업 등이 부담하는 비용·부담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문제가 발생
- ▶ 또한, 개정안은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중지하는 사유를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등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

※ 타법 사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략)…제26조 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 ▶ 한편, 소방특별조사 결과 대상에 포함된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이력’은 화재 발생의 원인, 고의·과실 여부, 화재의 정도, 영업양수·도 등에 따른 소유자 변경 등 화재원인과 그 귀책소지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다중이용업주에게 과도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소방특별조사 결과공개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관련 조문 정비

개선권고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시행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6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18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사례 0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평가기준

- ▶ 준수부담의 합리성

현 황

- ▶ 「디자인보호법」(이하 “법”) 제51조는 디자인등록 출원자의 우선권 주장에 필요한 서류 및 서류 미제출 시 제재(효력 상실) 등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 ▶ 개정령(안) 제47조는 법 제51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 요구권,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 미제출 시 우선권 주장 무효 규정 등을 규정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한글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 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문 제 점

- ▶ 국어번역문 미제출 시 우선권 주장 무효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는 과도한 준수부담 부과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국어번역문 제출 명령권, 국어번역문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의 제출 의무 및 국어번역문 미제출 시 우선권 주장 무효 규정은
 - 국민의 권리·의무 형성에 본질적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할 사항이나,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결과 초래

- **법제실무** (국민권익위원회, 2015. 1.)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중 중요한 사항이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하는 대상이다. (41p)

- **헌법재판소 판례** (헌재 1999. 5. 27. 98헌바70)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개정령(안) 제47조제5항 삭제
 - 법률에 근거 없이 우선권 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는 개정령(안) 제47조제5항을 삭제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8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 ② (생략)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⑤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를 말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 2017년 평가 사례임

사례 0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29조(손실보상의 절차) ①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8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 준수부담의 합리성

현황

추진배경

국제해사기구(IMO)의 e-Navigation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0년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에 이어 2021년부터는 대국민 e-Navigatio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

- 이에 따라 e-Navigation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국민 e-Navigation 서비스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 ICT 기술의 적용으로 해상교통관리 체계를 고도화, 지능화하여 해양사고의 저감 및 해상교통 효율화에 기여

주요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수립(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8~14조),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15~17조), 해상무선통신망 등 보호조치, 손실 보상(25~29조) 등

-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고(안 제23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

-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의 청구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기한을 명시(안 제29조제1항)
 - ※ 해상무선통신망 설비의 설치·보수·조사를 위한 타인의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제22조) 및 장애물의 제거(제24조), 토지 등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등에 대한 원상회복(제28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기한도 동일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 요구권, 지정된 기간 내에 국어번역문 미제출 시 우선권 주장 무효 규정 등을 규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① 해상무선통신망 설비의 설치·보수, 해상무선통신망 설비 설치를 위한 조사·측량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설치·보수나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29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등의 사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설비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공유 또는 사유(私有)의 토지와 그 토지에 붙어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수면·수저(水底) 또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할 때에는 토지등의 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29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장애물의 제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동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매설물(埋設物)·기기(器械)·죽목(竹木)이나 그 밖의 식물이 해상무선통신망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장애가 되거나 해상무선통신망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철거·상태변경·벌채(伐採) 또는 이식(이하 “제거”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공구조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인공구조물등을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인공구조물등의 제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제28조(원상회복의 의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표지물의 설치 및 제23조에 따른 토지등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문 제 점

- ▶ 손실보상의 청구기한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청구권자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보호에 미흡
 - 제29조제1항은 손실보상 청구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로 손실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의 원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어 손실보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특히, 제28조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등의 사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를 사전에 알기 어려우므로, 사유 발생일만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 등에 출입, 장애물 제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등에 따른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토지보상법」에 준하여, 손실보상 청구기한 개선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률 개정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 2021. 1. 30.] [법률 제16901호, 2020. 1. 29., 제정]

제27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 사용
3. 제26조에 따른 인공구조물등의 이전등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재결신청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2018년 평가 사례임

사례 0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생략)

-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최초 입주가능일 전까지 관리주체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선수관리비 규모는 해당 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관련 법령】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생략)

-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평가기준

- ▶ 준수부담의 합리성

현황

- ▶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2019.4.30. 개정, 2019.11.1.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2018.4.18. 이해찬 의원 등 14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현황**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리비선수금(관리비에치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주택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선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관리비선수금을 징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에치금)】

- (사용용도) 최초 관리비 납부 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총당하고, 입주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에치금에서 정산한 후 잔액 반환
- (납부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예치금 징구

- **내용**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선수금을 부담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에치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문 제 점

-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선수관리비 부담주체가 상이하여, 제도운영 에 따른 임차인 부담의 합리성 결여
 -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선수관리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불문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 국토교통위 심사보고서(2019.4월) 〉

* 개정안의 발의 취지가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예치금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략) 관리비 예치금과 동일한 성격의 예치금을 징수하고 있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예치금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시행령)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선수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제도 운용 가능성이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간 관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 등 제도 운영의 형평성 결여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선수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50호, 2020. 9. 29., 타법개정]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공주택 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 2019년 평가 사례임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개요

- ▶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나치게 미약하여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지 검토
- ▶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제재의 정도가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범할 유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평가

평가내용

- ▶ 제재규정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 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관련규정·내용을 검토
- ▶ 제재규정의 필요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지 검토

▶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정한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input type="checkbox"/>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input type="checkbox"/>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 방법은 없는가?	

사례 0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생략)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계법령	처분 내용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가. ~ 서.	(생략)	(생략)	
어.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2항 제9호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직무정지 90일

평가기준

-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 개정안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임 또는 직무 정지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의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 개정안은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검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술종사원에 대하여 1차 30일의 직무 정지를 명하고 차수 반복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문 제 점

- ▶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 수준이 과도할 경우 부패행위를 통해 제재 회피 시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재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
- ▶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되며, 신규교육은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이수해야 하고, 신규교육 또는 기존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목 및 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음

※ [별표 3] 자동차 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기준(제18조 제2항 관련)

신규교육		정기교육	
교육과목	교육 시간	교육과목	교육 시간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공학	20시간 이상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공학	8시간 이상
자동차 검사기기	5시간 이상	자동차 검사기기	2시간 이상
자동차 검사 실무	10시간 이상	자동차 검사 실무	4시간 이상

- ▶ 이 중 신규교육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선임되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이므로 실제 행정처분 대상은 정기교육 미이수자일 것으로 예상
- ▶ 현행 규칙 [별표 4]의 기술인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교육 미이수와 동일한 위반행위는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② 법 제43조제3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임
- ▶ 위의 ①과 ②의 위반행위는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직무 정지 기간을 1차 위반인 경우에도 30일을 설정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를 30일 동안 정지하여야 하는 사항인지는 의문임

-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교육을 받지 않는 기술인력은 30일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다시 60일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며, 2차 직무 정지 기간인 60일 동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90일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므로 직무 정지 기간이 최장 18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 ▶ 이와 관련하여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횟수(연 6회)를 고려하면 직무 정지 기간동안 진행되는 교육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개연성이 높고, 1차 직무 정지 처분기간(30일) 중 처분 시작일과 그 다음날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은 잔여기간(28일)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에 따라 각종 민원의 발생 및 편법적인 직무종사 행위가 발생하리라 예상되므로(예를 들어,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비업무를 지시 또는 상담) 교육 이수와 관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직무 정지 기간을 단축하고,
- ▶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실시되는 교육이 없을 경우 직무 정지 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자동차종합검사규칙)

[시행 2021. 10. 14.] [국토교통부령 제8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시행 2021. 10. 14.] [환경부령 제947호, 2021. 10. 14., 일부개정]

행정처분의 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생략)
2. 개별기준

가. ~ 더. (생략)			
러.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 제2항제9호		직무정지 10일

사례 0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5조 관련)

위반사항 및 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면허 취소			
2. 법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마.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 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바.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사람 사. 한쪽 다리 발목 이상을 잃은 사람 아.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3개 이상 잃은 사람	법 제20조 제1항제2호	면허 취소			
3. ~ 11. (생략)					

평가기준

-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거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조문 : 【철도안전법】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⑤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문 제 점

- ▶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2호 라목에서 아목의 사유는 2012. 6. 1. 법률 제11476호로 개정되기 전 「철도안전법」 제11조 및 2012. 11. 30. 대통령령 제24212호로 개정되기 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였던 사유이며,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삭제하여야 할 내용임

※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사유인 법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24212호로 2012. 11. 30. 개정되기 전)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 법 제1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말을 하지 못하는 자
2.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3.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자
4.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자
5.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3개 이상을 잃은 자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신체장애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 정비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입법예고안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5조 관련)

위반사항 및 내용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 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면허 취소			
2. 법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또는알코올중독자로서 해당분야전문이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사례 03 산지관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3]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 (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 라. (생략)

2. 개별기준 : (생략)

평가기준

-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 국유림이 아닌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 면적 및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법 제25조 제1항, 법 제28조),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채석신고를 한 자가 허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및 토사채취 등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음(법 제31조)

- ▶ 개정안은 법률 개정으로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경우 허가 취소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정하는 한편, 가중처분 적용 기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문 제 점

- ▶ 아래와 같이 1차 처분일이 가중처분 적용 기준기간을 경과하고, 가중처분 적용 기준기간 내에 2차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한 위법행위로 인해 다시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을 2차로 할 것인지 3차로 할 것인지에 대해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해석·적용하는 문제가 발생



- ▶ 이로 인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제2021-95호)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권고하였음
- ▶ 이에 따르면 일정기간 이전 누적된 제재처분 전력의 포함여부(누적회차 적용기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되, 가중처분의 취지를 반영하여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가중처분 적용 기준기간보다 짧게 설정하지 않아야 함

〈 누적회차 적용기준 설정 시 고려 사항(예시) 〉

기간	위반유형	위반대상	가중 적용 기간	가중 차수	누적회차 적용기간
단기	경미한 위반	생업, 생활 규제 등	1년	3차 ~	1~3년
중기	-	다종의 법익 관련 규제 등	3년	5차	3~5년
장기	중대법익 위반	안전, 건강 규제 등	5년 이상		5년 이상

※ 위 예시는 단순 참고사항으로 제도개선 추진 시에 가중처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 설정을 고려하도록 권고(시효·제척기간 5년과의 정합성 고려)

- ▶ 개정안은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면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적용차수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과잉행정 및 과도한 규제해소를 위해 누적회차 적용기준 마련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3]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 (제41조 관련)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80호, 2022. 8. 23., 일부개정]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 라. (생략)

사례 04 특허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65조5(전문심리위원의 지정) ① ~ ② (생략)

③ 심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생략)

평가기준

- ▶ 제재규정 적정성

현황

- ▶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8098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특허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전문심리위원의 수당과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문제점

- ▶ 전문심리위원의 거짓·부정한 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규정 미흡
 - 거짓·부정한 행위로 지정된 경우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상 제재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연 취소 규정 신설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4호, 2022. 7. 1., 일부개정]

제65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후보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 심판장은 법 제154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전문심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전문심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특혜발생 가능성

개 요

- ▶ 법령 등으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특혜를 획득·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되거나 용인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평가내용

- ▶ 수익적 규정 검토
 -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검토
 - 구체적인 수익 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 조항 검토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 특정 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 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 ▶ 특혜 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 ▶ 특혜 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 (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 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사례 0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법 제14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연구기관·대학 및 물기업 간의 공동 연구개발, 실증화 또는 사업화를 말한다.

평가기준

- ▶ 특혜발생 가능성

현황

개정 이유

- ✔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환경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 ✔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 물관리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시범사업, 분산화실증시설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 개정안은 제18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 ▶ 이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특혜부여 가능성이 높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관에게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법률 제14조제3항)하고 있으나,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해제사유 중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음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해제사유 중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신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당 문구 수정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 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재량범위 축소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60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

가. 교육·훈련과정의 편성 내용

나.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2.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서류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서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사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은 경우

3.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④ 법 제14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산업 관련 연구기관·대학·물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화 또는 실증화를 말한다.

사례 0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 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지정 대행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 특혜발생 가능성

현 황

- ▶ 개정안은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지정 신청이 없는 제품에 대해 지정 대행 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개선
 - 일반 공모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신청제”뿐만 아니라 지정과정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추천제”를 추가적으로 도입

문 제 점

- ▶ 우수문화상품 추천기준 부재로 자의적 재량권 행사 및 특혜발생 우려
 - 추천기준이 없을 경우 우수문화상품추천 관련 지정 대행 기관장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 및 사적이익 개입 우려
 - 또한,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제작자금, 제품의 판로 확보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노린 문화상품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받기 위한 로비와 특혜 지원 가능성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작자금의 지원
2.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서의 우선 입주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대통령령에 지정 대행 기관의 장의 우수문화상품 추천기준 마련
 - 지정 대행 기관장의 우수문화상품 추천기준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특혜 지원 방지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시행규칙 7조에 반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36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모형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9호, 2021. 6. 9., 일부개정]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모형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 2017년 평가 사례임

사례 0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신 설)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 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 ▶ 특혜발생 가능성

현 황

- ▶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추가
- ▶ 위탁대상에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 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자연휴양림 위탁현황〉

('14. 12월 기준)

소유 주체	휴양림 수	수탁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 공단	산림조합 · 비영리법인	독립가 임업후계자 산림기술자	15년 이상 산림분야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국가	2	2				
지자체	21		13	3	1	4

문 제 점

▶ 퇴직공무원 또는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 발생 우려

- 공익적인 자연휴양림의 위탁대상에 15년 이상 산림 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하여 공무원 특혜로 인한 사회적 비판 우려

경남 ○○군 △△ 등 3개 휴양림은 퇴직공무원 단체(8명)에 위탁

- 실질적 운영은 수탁자 단체가 아니라 (주)○○개발의 대표가 하고 있음
- 연간 약 100백만원의 순수익 발생
(운영자 인건비는 경비로 처리되어 순수익에 불포함)

- 또한, 위탁대상을 대부분 법인·단체로 하고 있으나,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는 개인 자격도 가능하도록 해 특혜발생 우려

전남 ○○군 △△ 휴양림은 개인(임업후계자)에게 위탁

- 연간 약 120백만원의 순수익 발생
(부부 인건비 연간 약 60백만원 순수익에 불포함)
▲ 시설이용료가 타지역에 비해 평균보다 높아 수입 증대 보장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탁대상의 특혜요인 개선

-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삭제
-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개인 위탁 조문 삭제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사례 0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7조의5(관리비 등) ① ~ ④ (생략)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⑥ (생략)

평가기준

- ▶ 특혜발생 가능성

현황

개정이유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임방식과 선임주체를 구체화하고 관리비의 공개의무 및 관리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4997호, '17. 10. 31.)됨에 따라,
 - (주요내용) 입점상인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설립된 법인의 관리업무 수행, 관리비 내역 공개의무, 회계감사 및 관리규정 제정의무 등
- 개정안에서는 ① 입점상인의 동의권 행사방법, ② 관리비의 세부항목·금융기관 예치의무·공개방법, ③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법,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및 관리규정 제정의무 등을 규정

- ▶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들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관리비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4종의 기관을 명시 (개정안 제7조의5 제5항)
 -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②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정하여 규정

문 제 점

- ▶ 일부 금융기관만을 관리비 등 예치 가능 기관으로 규정하여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발생 가능성 우려
-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 하여금 관리비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예치 가능한 금융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개정안 제7조의5 제5항은 특별한 이유 없이 4종의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관리비 등 예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에 한하여 관리비 등의 예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어 특혜 발생 소지 우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일반 예금업무 취급 금융기관을 모두 규정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1. 4. 8.] [대통령령 제31611호, 2021. 4. 6., 타법개정]

제7조의3(관리비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의3과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 ②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대규모점포등의 냉난방비와 급탕비
 5. 분뇨 처리 수수료
 6. 폐기물 처리 수수료
 7.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개 이상 점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상인이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입점상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명세, 연체내용, 수입 및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점상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9.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관리비등의 명세(제1항제6호·제7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명세를 관리비등을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⑦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잡수입(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을 말한다.

※ 2018년 평가 사례임

사례 0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별표1에 해당하는 자에게 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건축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건축물 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 ~ 9. (생략)

평가기준

- ▶ 특혜발생 가능성

현황

- ▶ 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562호, 2019.8.27. 개정, 2019.11.28. 시행)」 개정에 따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총괄 관리자 제도’ 등 신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이 중 개정안 제51조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소유재산이 철거 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신규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 혁신지구계획의 고시일 등 기준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 혁신지구 내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3항),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제5항)

문 제 점

- ▶ 협의를 통한 건축물 양도자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기준(요건, 면적한도 등)이 없어, 과도한 혜택 부여 우려
 - 개정안 제51조제5항에서는 공공용지,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등 공익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사유 규정
 - 특히, 혁신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통해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 수의계약 공급요건, 면적 한도 등을 설정하지 않아, ‘협의를 통해 건축물을 양도하는 자’에게는 제한 없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어, 협의 양도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발생 우려

* 혁신지구 내 건축물 소유자는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건축물을 주변시세 이하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등 일정한 혜택을 부여받고 있어, 토지 수의공급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공급요건, 한도 등) 필요

 「도시재생법 시행령」과 법률체계를 유사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는 협의 양도자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공급 및 면적기준’에 따라 수의공급

【참고】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

공급기준	공급면적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개발구역 내의 토지 전부를 양도한 경우(공고일 이전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함)	1세대당 1필지 기준, 1필지당 165㎡이상 330㎡ 이하 범위 내 규약 등으로 정한 면적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고일 현재 소유한 개발 구역 안의 토지 전부를 양도한 경우 등	산식에 따른 면적 범위 내 규약 등으로 정한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 소유 토지면적 - 주택건설사업 소유 토지면적×(사업지구 도시기반시설면적 / 지구 총면적)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협의를 통해 건축물을 양도한 자’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공급기준(공급대상, 면적 등) 마련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도시재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17., 타법개정]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우선 공급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⑤ (생략)

⑥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 제1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생략)

2. 혁신지구 재생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 법 제44조 제4호의 법인에 현물 출자한 자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나. 별표 2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같은 표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3. (생략)

⑦ ~ ⑧ (생략)

[별표 2]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 (제51조 제6항 제2호 나목 관련)

1.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소유하고 있는 혁신지구 안의 토지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면 해당 소유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 그 외 지역은 400㎡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양도해야 한다.

가. 기준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나. 기준일이 지난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혁신 지구안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

다. 기준일이 지난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

2. 공급대상 토지·건축물 및 공급면적

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되 1세대(법인일 때 해당 법인을 1세대로 본다)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 이상 330㎡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였으면 주택건설 용지를 공급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혁신지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frac{\text{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text{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text{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times \frac{\text{해당 사업지구의 도시기반시설면적}}{\text{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에 등록된 공장소유자였으면 공장용지를 공급하되 나목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공장소유자”로 본다.

※ 2019년 평가사례임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개요

-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추상적·다의적 법령은 집행과정에서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남용되는 등 부패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

평가방법

-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 등의 적용 대상 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 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으로 선택 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 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 등이 적정한지 검토
-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사과정에 당사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청취 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공문 등)가 공개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 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 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 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사례 01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7조의5제2항과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1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발급수수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기능등급확인증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수수료 감면 사유 (제13조제2항 관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제9조에 따라 등급보유자 본인의 등급증명서를 처음으로 발급받는 사람
6. 제10조에 따른 정정 및 추가신청으로 등급증명서 내용이 수정된 후 처음으로 발급받는 사람
7. 그 밖에 수탁기관의 장이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평가기준

- ▶ 재량규정의 구체성

현황

제정|이유

- ☑ 건설근로자를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관리하고, 건설기술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 ☑ 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발급신청 방법, 발급기간 및 수수료 등 기능등급 발급을 위한 절차와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 제정안은 제13조제1항에서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한 수수료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별표1]에서 기능등급확인증 종류별 발급수수료 금액, [별표2]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발급 수수료 감면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문제점

- ▶ 발급 수수료 감면금액을 사유별로 정하고 있지 않고,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여,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확보가 미흡
 - 감면사유별 감면금액, 감면효율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 동일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발급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할 위험이 있음

- ▶ 수탁기관에게 수수료 감면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별도 확인 절차가 없어 위탁·대행의 관리·감독이 필요
 - 수탁기관의장이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 보고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면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할 위험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발급 수수료 감면사유별로 감면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입법 취지가 감면이 아닌 면제일 경우 '면제한다'로 문구 수정
- ▶ 기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수료 감면에 대한 관리 규정 마련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2.] [국토교통부령 제852호, 2021. 6. 2., 제정]

제8조(수수료)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50퍼센트로 한다.

1. 기능등급증명서: 2,000원
2. 보유증명서: 4,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건설근로자가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정사항을 반영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정정 신청에 대해서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병(兵)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사례 0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7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2. 전통기술분과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3. 전통지식분과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평가기준

-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개정이유

- ☑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등 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이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가 격상됨에 따라 인정서 수여주체를 대통령으로 상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제7조에서 분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문 제 점

- ▶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분과위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성, 객관성 확보가 미흡
 - 분과위원회는 무형문화재 지정 및 해제,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에 대한 인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하고 있으나,
 -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를 문화재청장에게 일임하는 등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분과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가 미흡
- ▶ 분과위원회 위원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이해충돌 가능성 존재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과 위원회는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둘 수 있는 본 위원회의 하부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위원을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유사법령과 비교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
- ▶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권자를 위원장으로 변경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무형문화재법 시행)

[시행 2022. 7. 19.] [대통령령 제32706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11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2. 전통기술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3. 전통지식분과위원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사례 0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조(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2. ~ 31. (생략)
3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기관에 준하여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는 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평가기준

-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황

- ▶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채권 등을 말하며(법 제2조제2호), “비업무용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금융회사등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매각하려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말함(법 제2조제4호)
- ▶ 금융회사 입장에서 부실자산의 비중이 증가하면 재무 건전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실자산을 합리적인 가격에 신속히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러한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 촉진 및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 지원 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를 설립하였음

- ▶ 이 법에 따르면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인수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입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4조)
- ▶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금융회사등의 출자 및 정부의 출자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의 출자금은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9조)

문 제 점

- ▶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부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법 제3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함(법 제9조 제2항)
- ▶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법 제2조 제1항 및 현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는 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금융회사등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됨
- ▶ 하지만, 개정안의 경우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융관련 타 법률의 유사 규정을 참조하여 “고시” 절차를 통해 지정 절차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

※ 참고 법령 조문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항 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함에 있어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관련 조문 정비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2조(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31.(생략)

3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공사가 그 부실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사례 0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대상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별표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심사 대상으로 한다.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 (제22조 관련)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승진심사 대상
1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8배수
2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7배수
3~5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6배수
6~10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45명

평가기준

-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상위법률인 소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은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 또한, 동법 제16조는 승진심사를 위하여 중앙·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승진심사 위원회는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현행 규정 제22조 및 별표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 (제22조 관련)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승진심사 대상
1명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이하 "통합명부"라 한다)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5순위인 사람까지
2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8순위인 사람까지
3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12순위인 사람까지
4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16순위인 사람까지
5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18순위인 사람까지
6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20순위인 사람까지
7명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22순위인 사람까지
8명 이상	명부 또는 통합명부에 따른 순위가 1순위인 사람부터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배수에 해당되는 순위인 사람까지

문 제 점

- ▶ 개정안에 따르면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 대상의 배수는 아래와 같음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 (제22조 관련)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승진심사 대상	대상인원 (배수)
1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8배수	8명 (5배수 초과)
2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7배수	7명 (5배수 초과)
3~5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6배수	6명 (5배수 초과)
6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30명	33명 (5배수 초과)
7명		36명 (5배수 초과)
8명		39명 (5배수 이하)
9명		42명 (5배수 이하)
10명		45명 (5배수 이하)
11명 이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45명	5배수 이하

- ▶ 상위법령의 규정과 달리 승진심사 대상을 5배수의 범위를 벗어나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5배수의 범위로 변경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5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정비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2. 4. 15.] [대통령령 제32043호, 2021. 10. 14., 타법개정]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인 사람의 수 (제22조 관련)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승진심사 대상인 사람의 수
1 ~ 10명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명당 5배수
11명 이상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50명

사례 05 행정사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 업무정지처분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인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일반인에게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1호	2개월	4개월	6개월
	(이하 생략)			

평가기준

-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 ▶ 관할 시장 등은 행정사가 두 개 이상의 사무실 설치, 보수 외에 재산상 이익이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32조)



행정사법 제32조 제2항(업무정지에 관한 기준)

제32조(업무의 정지) ①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문 제 점

- ▶ 행정처분에 대한 가중기준 또는 감경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
 -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이 개입될 수 있어 위반자의 로비 등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 행정처분의 감경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을 감면받기 위한 위반자의 부정 청탁 등 부패행위 발생 여지가 더 많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 ▶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령 제257호, 2021. 6. 9., 일부개정]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표]

업무정지처분 기준 (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준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그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그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생략)

사례 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은 출생아동 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1회 지급한다.

② ~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권의 신청 등 서식, 사용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평가기준

-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현 황

-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동 또는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1회 지급하며,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 등을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첫만남이용권 : 아기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기본 출산금을 지원하는 제도('22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 ▶ 지자체장은 이용권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신용카드 등의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문 제 점

- ▶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준, 신청방법 등을 정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고,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저해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준, 신청방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데 있어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고, 이해관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을 개선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4. 1.] [대통령령 제3238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② 법제10조제5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청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급아동에게는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⑥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개요

- ▶ 행정권한·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지 평가

※ ‘위탁·대행’외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이나 위탁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을 지정한 후 그 지정기관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행정청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이나 대행과 유사하여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평가기준으로 평가 필요

-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절차·운영방식이 투명한지, 관리·감독 수단이 합리적인지,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이 있는지 등 평가

평가방법

- ▶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위탁사무의 내용이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 수탁기관이 재위탁 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탁·대행의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 ▶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규정 등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

수탁·대행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서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사례 0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평가기준

-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 법 제8조의3제1항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규정 신설

문제점

- ▶ 공공기관 등으로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면서 위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없어 수입·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미흡
 -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위탁 후 수입·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 수입·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위임·위탁사무 관리·감독을 위한 보고의무 등 규정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된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 「한국산업 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은 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례 0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8조(업무의 위탁) 중소기업부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과 등록 변경 신고의 접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개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및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3. 법 제34조에 따른 지도법인의 해산 통보의 접수
4. 법 제35조에 따른 지도법인의 정관 변경 신고의 접수
5. 제7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접수
6.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7.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갱신등록 신청의 안내
8. 제13조에 따른 지도법인의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9.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통보의 접수

평가기준

-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42호, 2020.4.7. 제정, 2021.4.8. 시행)은 중소기업부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사의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의 근거규정 마련(법률 제41조)

- 같은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같은 법률 제41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장이 지도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9가지의 업무를 규정(안 제18조 제1호부터 제9호)

문제점

- ▶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가 없어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미흡

- 사무위탁 후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 제출, 보고 의무 등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위탁사무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등 규정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상위법률 및 해당 법령 개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약칭: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42호, 2020. 4. 7., 제정]

제40조(지도·감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도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사회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시행 2021. 4. 8.] [대통령령 제31611호, 2021. 4. 6., 제정]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개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및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의 해산 통보의 접수
4. 법 제35조에 따른 지도법인의 정관 변경 신고의 접수
5. 제8조제1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6.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7.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의 접수
8.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의 발급
9. 제15조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례 0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한국환경공단
3. 법 제16조4제1항에 따른 환경건설팅회사

제20조의6(전담기관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상품의 대상 경제활동에 대한 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
 2.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 평가체계 구축의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0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검증
 4. 제20조의4제3호부터 6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
- ② 법 제10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한다.

제20조의7(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② ~ ③ (생략)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검증 결과 업무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법 제16조의7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⑤ ~ ⑥ (생략)

평가기준

-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개정 이유

- ④ 전국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근거 마련,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에 따라,
- ④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환경책임투자 지원 전담기관 대상, 업무범위,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정보 공개대상 자산총액 규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 개정안은 제20조의5에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책임투자 지원 전담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환경컨설팅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의6에서 전담기관의 업무범위를 구체화 하고 있음
- ▶ 또한, 제20조의7에서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공개방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 ▶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검증 업무의 공정성 확보 우려
 -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0조의5제2항)하는 한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결과 업무성과가 미흡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시행령 제20조의7제4항제1호)하고 있으나,
 -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검증 업무를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검증결과의 공정성 확보가 미흡

▶ 전담기관 수행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장치 부재

- 전담기관은 표준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표준 평가체계 구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 운영실적 평가 등 관리·감독장치가 없고,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수행의 책임성 확보 곤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검증 업무의 공정성 확보장치 마련
- ▶ 전담기관의 업무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장치 마련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20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한국환경공단
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건설팅회사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2. 제1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법 제10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와의 적합 여부 확인
 2. 제20조의3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정보의 수집·관리
 3. 제20조의3제2호에 따른 협의체계의 운영
 4. 제20조의3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관리
 5. 제20조의3제4호에 따른 국제동향 및 국제교류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6. 그 밖에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⑥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전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 ⑦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04 지방재정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재정분석과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평가기준

-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제54조, 제55조)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음(법 제55조제6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위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여부 결정 (시행령 제65조~제66조의2)

- ▶ 개정안은 법 제55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과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65조제3항)

문 제 점

-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위탁기관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의 투명성 결여
 - 위탁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자의적으로 선정될 우려가 있는 등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 위탁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의 불법 로비 등 부정청탁이 우려되며,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위탁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토록 개선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4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65조의2(재정진단) ① ~ ④ (생략)

⑤ 법 제55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2018년 평가 사례임

사례 05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출 것

② (생략)

③ 정책협의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융합기술 진흥에 관한 전문성
2.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 확보 여부
3.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현황

- ▶ 광융합기술의 진흥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과 인력, 전용 업무 공간과 시설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 정책협의회는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광융합기술 진흥에 관한 전문성, 진흥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법 제12조제2항)

1. 광융합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광융합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광융합기술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 추진
4. 광융합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문 제 점

- ▶ 전담기관 지정 요건인 전담조직, 인력 및 전용 업무 공간과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없어
 - 추상적이며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정책협의회가 지정에 관한 심의 시 재량판단의 기준 부재로 재량 행사에 부정청탁 등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참고 : 법제처 「법령 입안 · 심사 기준」

- 지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지정요건, 취소요건, 비용부담, 감독규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 ▶ 전담기관을 지정한 사실만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규정하고, 지정 취소한 경우는 공개규정 부재
 - 전담기관 지정 취소 시 공개 관련 규정이 없어 국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공개성 저하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광융합기술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용 업무 공간, 시설 등의 세부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사실에 대한 공개 규정 마련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광융합기술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1. 8. 9.] [대통령령 제31931호, 2021. 8. 6., 타법개정]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8년 평가 사례임

(3) 재정누수 가능성

개요

-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 평가
-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평가방법

- ▶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 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검토
 -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다른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지원수준이 적절한지 검토
- ▶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결정주체, 결정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대상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책임성 확보 수단 검토

-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확인 수단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 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확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 신청 등이 위법한 경우, 지원 취소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 규정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input type="checkbox"/>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 제도와 비교할 때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 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input type="checkbox"/> 목적외 사용 등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 또는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등)	
<input type="checkbox"/>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사례 01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별표 5]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사용료의 감면
 - 가. (현행과 같음)
 - 나. 지방항공청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공항의 여객처리능력(여객청사면적을 기준으로 한 처리능력을 말한다)에 비하여 전년도의 공항시설 이용실적이 30퍼센트 이하인 공항 중 공항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경우
 - 2)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항공운송 여건의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항공운송사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료의 징수방법
 - 가.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 소유자를 포함한다)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각종 사용료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납부기일은 사용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이 사용료를 징수 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평가기준

- ▶ 재정누수 가능성

현황

- ▶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는 전년도 10여 차례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

※ 해당 방안에는 공항시설사용료를 추가 감면('21.1월~6월)하고,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감면사유 및 납부유예 근거를 마련(~'21년 상반기)한다는 내용 포함

- ▶ 이에 따라 개정령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국제적 확산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납부기한을 연기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내용임
- ▶ 현행 「공항시설법」 제32조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 다만,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이러한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중 토지·건물 등의 사용료,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금액 및 감면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령 상 감면대상은 여객처리 능력에 비해 전년도 이용실적이 30% 이하인 공항에 한정(사용료는 국고 귀속)
- ▶ 이와 달리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주차장사용료 등 공항시설사용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의 내부 규정(사규)에 따라 산정·징수가 이루어지고 공항공사의 자체 수입으로 귀속진흥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문 제 점

- ▶ 앞서 언급한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방안에 따라 공항시설감면료를 산정·징수하는 각 공항공사는 내부규정(사규)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 감면 근거 및 징수유예 사유를 마련(20.1분기)



공항시설사용료 징수규정(한국공항공사)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 ③ (생략)

④ 사장은 정부로부터 항공산업 위기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징수유예) ① 공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2. (생략)

3. 정부로부터 항공산업 위기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 ▶ 한편, 이동제한 등으로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항만분야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해양항만분야 지원대책’(20.2.17, 3.2, 4.20)에 따라 피해기업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근거 마련하고, 부칙 제2조(적용례)를 통해 사용료의 소급적용일 및 감면종료일을 구체적으로 적용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20. 4월)

※ [별표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을 및 감면대상(제9조 관련)

- 1.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을 및 감면대상(생략)
- 2.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을 및 감면대상(생략)
- 3. 코로나19 지원대책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을 및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입출항료	100%	(1)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중항로 국제 카훼리 여객선(2020년1월28일부터 여객운송 재개일까지) (2)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상 선사가 운항하는 한일항로 국제 여객선(2020년2월1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일까지)
		(이하 생략)

※ 부칙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여객운송 재개일이나 감염경보 해제일과 같이 감면종료일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는 경우, 감면종료 사유 해제일과 2021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짜를 감면종료일로 한다.

- ▶ 이와 달리, 개정령안은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감면 사유로 “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항공운송 여건의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항공운송사업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납부유예 사유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 이는 현행 규칙의 감면요건인 ‘여객처리능력 대비 전년도 공항시설 이용실적 30% 이하’와 비교할 경우에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 국고로 귀속되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고재정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개정령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문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관련 조문 정비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시설종류별 사용료 계산의 방법 및 금액
 - 가. ~ 나. (생략)
2. 사용료의 감면
 - 가. (생략)
 - 나. 지방항공청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1) 전년도의 공항시설 이용실적이 공항의 여객처리능력(여객청사면적을 기준으로 한 처리능력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하인 공항 중 공항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공항에 착륙하거나 이륙하는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 2)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따른 항공운송여건 악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
3. 사용료의 징수방법
 - 가.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 소유자를 포함한다)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각종 사용료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납부기일은 사용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내로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따른 항공운송 여건의 악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 다. (생략)

사례 0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4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소속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④ (생략)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5·18민주유공자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⑦ (생략)

※ 참고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0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0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각 단체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 나. 변호사 1명 이상
 -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④~⑦ (생략)

평가기준

- ▶ 재정누수 가능성

현황

- ▶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복지사업심의원의 설치 등) 신설('21.1.5.)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재심의·운영에 관한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임

문제점

- ▶ 공무원 위원의 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지급 시, 재정누수 가능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의 위원 위촉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과지급 우려

♣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 위원회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운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여비가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미지급 단서 사항 신설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18.] [총리령 제1792호, 2022. 2. 18., 일부개정]

- 제3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각 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각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각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6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사례 03 소프트웨어 진흥법

평가대상 조문

제34조(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평가기준

- ▶ 재정누수 가능성

현 황

- ▶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문 제 점

- ▶ 출연금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규정 부재로 재정누수 우려
 -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출연금의 환수 및 관리 등의 규정이 없어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시, 환수하는 등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출연금 환수근거 규정마련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74조(출연금 환수)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된 출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의 지원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4. 제63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18년 평가 사례임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개요

- ▶ 정책결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 의견진술 제도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에 참여·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하위법규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평가방법

-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 검토
 - 참여제도에 이해당사자, 일반국민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참여 기회는 충분한지,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 ▶ 참여제도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0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3조(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조 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보행환경, 보행자 사고 현황 및 분석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4. 기관별, 연도별 추진계획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식 함양 및 홍보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보행안전지수의 조사·공표 등) 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행 안전지수(이하 “보행 안전지수”라 한다)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이행 실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② ~ ③ (생략)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평가기준

- ▶ 접근의 용이성

현황

- ▶ 개정안은 법률 제7조의 위임에 따라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포함내용, 수립 및 변경 관련 세부 절차, 내용 등을 정하려고 함

- 보행자길 · 보행환경 · 보행자 사고 현황 및 분석, 정책 · 사업 추진성과 분석, 부문별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등

- ▶ 개정안은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행안전지수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하려고 함

-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이행 실태 등

※ 보행안전지수 조사항목

구분	주요내용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보행자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사고 인명피해규모를 중심으로 보행자 사고 안전 수준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연령(어린이, 노인, 일반인), 사고공간(횡단중, 차도통행중, 길가장자리 통행중, 보도통행중) ※ 사망 · 중상 · 경상 등 사고 심각도별 가중치를 반영 후 합산, 지역별 인구수 및 도로연장 고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이행 실태 (정책적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 사업 추진 노력도를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만명당 보행사업 예산 규모,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비율, 교통단속 노력도,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

문 제 점

- ▶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을 관보에만 공고 하도록 하여 일반국민들에게는 접근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 ▶ 보행안전지수의 조사·공표함에 있어 불특정된 인터넷상에 공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을 일반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 보행안전지수의 조사·공표함에 있어 일반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행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6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2조의2(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장 및 특별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행자길, 보행환경 및 보행자 사고 현황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성과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4. 기관별,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된 투자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6.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투자자원 확보 등의 이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 항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하여 산정한다.

1.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이행 현황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지수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사례 0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림청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평가기준

- ▶ 접근의 용이성

현 황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행·감리,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등(법 제2조제2호)

- 제정령안은 법의 위임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문 제 점

- ▶ 전문기관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조항 부재
 -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제재가 필요함에도 관련 조항 부재
 - 이에,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별다른 제재 없이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소지가 있는 등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법령 입안 · 심사 기준 (법제처, '12.12.)

- 영업허가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등의 제재 외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업의 성질에 따라서는 영업장폐쇄와 같은 제재를 하기도 한다.
-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은 영업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다. '등록'을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기재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부에서 지운다'는 의미의 '등록말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등록'을 '약한 의미의 허가'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현행법상 '등록말소'보다는 '등록취소'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등록의 취소(말소)는 상대방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등록을 취소(말소)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 규정 마련
 - 지정취소 · 행정처분의 근거 및 지정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 마련
 -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마련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기술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1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4조(산림기술 연구 · 개발사업) ① (생략)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 ·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기술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 · 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 법인 · 단체 · 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 · 자금 ·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⑧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제4조제4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조 제6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4조 제5항	시정명령 3개월 시정명령 6개월
1) 별표 1 제2호의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별표 1 제3호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례 0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
3.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중지·중단한 때
4. 제5조제1항의 등록 요건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평가기준

- ▶ 접근의 용이성

현 황

- ▶ 제정법률안은 산출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요건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문 제 점

- ▶ 산출기관 등록취소 시 청문 절차 부재로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 제한
 - 금번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에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하고 있던 민간 산출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 후 기존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 금융위원회가 청문 절차 없이 산출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 제한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 저해 우려

법령 입안 · 심사 기준 (법제처, '12.12.)

- 인가 · 허가 · 면허 · 등록 · 승인 · 지정 등의 취소 및 철회, 법인 · 조합 등의 설립취소 · 해산명령 철회 · 폐쇄명령, 제조 · 판매 금지, 자격의 박탈 등과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 ·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 규정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산출기관 등록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거래지표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50호, 2019. 11. 26., 제정]

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해당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2018년 평가 사례임

사례 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1조(빈집의 철거보상비)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평가기준

- ▶ 접근의 용이성

현황

개정이유

- ☑ 「도시정비법」상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이관하고, 빈집의 체계적 정비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법률 제14569호, '17.2.8 제정, '18.2.9 시행]
- ☑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빈집 실태조사·철거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능 구역 및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의, 빈집의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방법 등,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방법, 각종 특례, 관련지침 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 ▶ 시장·군수 등은 방치되거나 버려진 주택 등 ‘빈집’에 대한 개·증축 또는 철거 후 신축 등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빈집”의 정의 (법 제2조제1항제1호, 시행령안 제2조)

-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만, 미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별장 등은 제외

※ 전국 빈집 현황 : '10년 81.9만호 → '15년 106.9만호 (25만호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철거 명령이 가능하고, 소유자가 60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가능

* 이 경우, 철거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철거통지서를 소유자에게 통보

→ (유사입법례) 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제7조(철거명령등), 건축법시행령 제116조의2(빈집철거통지)

- 직권철거에 따른 건물 보상비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권한은 없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제21조) 또는 감정평가법인(제29조)

문 제 점

- ▶ 철거보상비 감정평가 절차에 빈집 소유자의 의사반영체계 미비
 - 감정평가 과정에 소유자의 의사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가 없고,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평가업자로만 감정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 유리한 평가액 산정을 위해 행정청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등 부패행위가 발생할 우려

【참고】 관련 입법동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상진 의원 등 11명, '17.2.22.)

가. 제안이유

-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평가액을 기초 지자체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규정
- 그러나, 기초지자체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만이 해당 정비사업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

나. 개정안 내용

-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도록 함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

구분	당 초	개 정 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 시장·군수 선정 2인 이상	▶ 시장·군수 선정 1인 이상 + 조합 선정 1인 이상
재건축사업	▶ 시장·군수 선정 1인 이상 + 조합 선정 1인 이상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철거대상 건축물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근거 마련

-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비 산정

* 단,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직권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로만 평가 실시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법령 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9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①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② 빈집 소유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군수등이 제9조제4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2017년 평가 사례임

(2) 공개성

개 요

-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 판단
-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 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도 포함

평가방법

- ▶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 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이 공개된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0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단위별 위원 수 및 위원 선임방법 및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 ▶ 공개성

현황

- ▶ 개정안은 대학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관련 제반 사항이 논의될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제도를 보완·정비함

문제점

- ▶ 위원회 위원장 선임방법 미흡
 - 회의소집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 위원장의 선임방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위원장 선임으로 인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위원회 위원장의 선임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약칭: 대학등록금규칙)

[시행 2022. 2. 7.] [교육부령 제257호, 2022. 2. 7., 일부개정]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⑤ ~ ⑨ (생략)

사례 02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법 제22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
2. 위험의 관리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평가) ①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는 자산관리회사의 재산과 업무상태 및 위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실태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제4호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 ④ 한국부동산원은 경영실태평가 업무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①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전산설비 및 물적설비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주주(최대주주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 주주)에 관한 사항
 3. 겸영 등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인가당시와 동일성이 달라지게 될 경우 투자자 보호 또는 경영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
 4. 변경사항
 5. 그 밖에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회의의 의사록
2.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평가기준

- ▶ 공개성

현 황

개정|이유

- ☑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경영건전성 준수 의무하고,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 ☑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회사 인가업무 시 사실확인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 개정안은 법 제22조의3제9항 및 제10항에 근거하여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시행령 제22조의2) 및 경영실태 평가방법(시행령 제22조의3)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인가사항의 변경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시행령 제42조의4)

문 제 점

- ▶ 자산관리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및 경영실태평가 방법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시행령상 규정만으로는 충분한 공개성 확보가 어려움

- 자산관리회사는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의 적정성, 위험의 관리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의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음
-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나,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재량규정으로 두어 고시하지 않을 경우 예측가능성 확보가 어려움

▶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에 대한 공개성 확보가 곤란

-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인가사항 변경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경인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어, 고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가 곤란할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
- ▶ 경영실태평가 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
- ▶ 변경인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39호, 2022. 5. 9., 일부개정]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① 법 제22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적정성, 그 밖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를 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재산과 업무상태,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해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① 법 제40조제4항에서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산설비, 물적설비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주주 및 최대 주주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경영 등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인가 당시와 동일성이 달라지는 경우 투자자 보호 또는 경영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 내역
5. 그 밖에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변경인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서 등의 서식, 변경인가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03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48조의3(유전자검사항목의 관리) ①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또는 받으려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공하려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미성년 검사대상자의 관리 및 보호방안을 별도로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1. 검사 목적과 방법 및 근거
2. 검사결과 함의 및 근거
3. 검사대상자에게 기대되는 이익과 위험 여부와 그에 따른 관리 및 보호 방안
4. 그 밖에 제2항의 평가 시 고려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항목별로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항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평가한다.

1. 해당 항목의 표현형과 선정된 유전형의 근거가 있을 것
2. 해당 항목의 표현형과 검사의 분석 결과와의 관계가 확인될 것
3. 해당 항목의 검사결과로 인한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없을 것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모두 만족하는 경우 허용을 통보하며, 허용이 불가한 경우에 그 사유를 통보한다. 이 경우 검토결과는 제1항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대 60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연 사유 등을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항목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어느 하나가 미흡한 경우 최대 2년 이내에 서 조건부 임시허용을 결정하고 2년 후 제공 실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이 때 검사기관은 임시허용 항목에 대한 2년 간 실적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재평가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 허용은 중지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및 재평가를 위한 신청서류와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공지하고, 평가 또는 재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기관별 허용 또는 임시허용 여부 및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⑥ 법 제49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용 또는 임시허용 된 항목만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인증기관의 장은 제5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해 검사대상자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 및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제출받아 적절성을 검토하여 사용을 승인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한 시행 관리 및 검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홍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인증 후 시행되는 검사항목에 대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항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8조의5(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질병관리청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종사자 대상 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종사자 대상 교육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유관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한 충분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48조의6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 공개성

현 황

- ▶ 개정안은 인증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검사기관 질적 확보와 동시에 항목허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 또한, 유전자검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해 종사자 교육을 받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문 제 점

- ▶ 평가결과 및 기관별 허용사유 등에 대한 공개장소 등 부재
 - 인증기관의 장은 항목에 대한 실적 평가결과와 기관별 허용여부 및 그 사유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어디에 공개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
- ▶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공개장소 등 부재
 -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어디에 공개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평가결과 및 기관별 허용사유 등에 대한 공개장소 등을 수요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 ▶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공개장소 등을 수요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보건복지부령 제852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49조의4(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변경인증) ① 제49조의3에 따라 검사역량 인증을 받은 기관이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에 그 인증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5(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 결과 통지 등)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은 검사역량 인증·재인증 및 인증 취소 결과에 관한 사항을 해당 인증을 신청한 유전자검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9조의7(유전자검사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유전자검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질병관리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 가. 유전자검사교육 실시를 위한 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 나. 유전자검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 다. 유전자검사 관련 연구 또는 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사례 04 물환경보전법

평가대상 조문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①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골프장에서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및 그 잔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 공개성

현 황

-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관할 골프장에서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및 그 잔류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문 제 점

- ▶ 골프장의 농약사용 및 잔류여부 확인결과에 대한 공개장소 부재
 - 시·도지사는 골프장에서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및 그 잔류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그 결과를 어디에 공고한다는 내용이 없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골프장의 농약사용 및 잔류여부 확인결과에 대한 공개장소 등을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①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 4.] [환경부고시 제2019-6호, 2019. 1. 4., 일부개정]

제10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보고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자료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 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각 골프장 사업자에게 제2조,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이 표기된 표지판을 클럽하우스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에 설치할 표지판 양식은 별표4와 같다.

사례 0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등)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및 관리 능력 등 운영체계
2. 기술지도의 충실성, 사업장의 만족도 등 업무성과
-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법제15조(안전관리자등) ① 사업주는사업장에안전관리자를두어제13조제1항각호의사항중안전에관한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 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 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평가기준

- ▶ 공개성

현 황

개정이유

- ✔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재해예방기관*(13개 분야)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우수기관 양성을 위해, 평가근거가 없는 5개 분야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민간재해예방기관 : 산재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용노동부 지정·등록 13개 분야의 1,135개 기관('16년 기준)

* 13개 분야 : 안전관리전문기관(107), 보건관리전문기관(11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85),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30), 건설업기초교육기관(90), 직무교육기관(20), 안전인증기관(5), 안전검사기관(4), 지정검사기관(21), 석면조사기관(222), 지정측정기관(165), 특수건강진단기관(224), 안전보건진단기관(47)

- ☑ 주요내용 : 5개분야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석면조사기관,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 법 제15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 평가의 기준·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시행규칙 제15조의5에서 관련 내용 규정

 【참고】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개요

- 추진배경 : 민간재해예방기관(13개 분야)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관리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및 우수기관을 양성하기 위함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하위 법령 포함)

평가분야	평가근거(법)	위임(시행규칙)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제15조제5항	제15조의5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제16조제3항	
③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30조의2제4항	제19조의2
④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7
⑤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제35조
⑥ 직무교육기관		제37조의4
⑦ 안전인증기관	제34조의5제2항	제39조의3
⑧ 안전검사기관	제36조제7항	-
⑨ 지정검사기관	제36조의2제6항	-
⑩ 석면조사기관	제38조의2제6항	제80조의3
⑪ 지정측정기관	제42조제9항	제97조
⑫ 특수건강진단기관	제43조제10항	제106조
⑬ 안전보건진단기관	제49조제3항	제126조의2

※ 현재 위 평가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 위탁

- 평가 내용
 - (평가등급) 5등급 절대평가(1,000점 만점)
 - (평가항목) 운영체계분야(400점), 업무성과분야(600점)
 - (평가주기) 매년(단, 일부 분야는 2년에 1회)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보건 서비스 향상 유도, 안전관리공단의 각종 비용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기관 양성

문 제 점

- ▶ 불분명한 평가기준에 따른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하
 - 평가기준이 '보유수준', '충실성', '만족도' 등 포괄적·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어, 피평가 기관의 평가기준에 대한 예측 곤란
 - 행정청의 자의적인 평가제도 운영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 저해 우려
- ▶ 이의신청 절차의 부재로 피평가기관의 권리보호에 미흡
 - 평가결과는 피평가기관의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 ※ 평가결과는 안전보건공단의 비용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반영, 우수기관 정부포상 실시,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 및 기관 이미지에 영향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누락으로, 피평가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에 저해
- ▶ 결과공개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평가 우려
 - 평가결과의 공개는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단인 동시에, 평가대상자들 간 결과공유를 통해 평가 자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 평가결과의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공개여부가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우려가 있어 평가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

관련 보도 사례

시내면세점 평가 ‘조작’...관세청 점수 조작, 檢 수사 본격화 <컨슈머치, '17.7.12.>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획득 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하면서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탈락했다... 관세청이 사업자를 선정 발표가 있기도 전에 한화갤러리아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도 특혜 관련 의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으나 관세청 직원들이 관련 증목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구심은 더 강해졌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세부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신설
-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 신설
- ▶ 평가 결과의 공개 의무화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8.]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제17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평가기준등)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기술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

②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받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④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⑦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하여 공개해야 한다.

※ 2017년 평가 사례임

(3) 예측 가능성

개 요

-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한지,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판단
- ▶ 이해관계자 등이 자격기준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고,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에 대비하기 위한 부패행위를 예방

평가방법

- ▶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구체성 검토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 행정절차 관련규정 이해의 용이성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 예측가능성 판단
 - 모호한 기준 중의적·다의적 표현 등으로 행정청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 재량을 행사하거나, 민원인이 처리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의협의승인등의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사례 01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조의2(수탁기관의 지정 등) ①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적격성 심사 및 평가를 위한 세부 항목 및 기준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주택관리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3.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4. 국방 분야 업무수행에 적합한 보안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 ② 국방부장관은 군 숙소 관리 등을 위하여 수탁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업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수탁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평가기준

- ▶ 예측 가능성

현 황

- ▶ 개정안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군 주거시설 관리 전담수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수탁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문 제 점

- ▶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 미흡
 - 수탁기관 지정·지정취소 기준 및 관련 절차를 행정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수탁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40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6조의2(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이하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주택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3.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 군 숙소 관리에 필요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것
- ②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 계획·일정과 지정 기준 등을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③ 군숙소관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주택관리 분야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주택관리 분야의 사업 수행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 ⑥ 국방부장관은 군 숙소의 권역별 관리를 위하여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 ⑦ 국방부장관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숙소관리수탁기관 지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 지정 절차와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44조(보증료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진흥원이 개인의 신용도, 보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料率)에 따라 산출한다.

※ [참고]

법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평가기준

▶ 예측 가능성

현 황

- ▶ 법률 개정에 따라 신용 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외에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령 안 제44조는 보증료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음

※ 연체보증료 : 보증료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부과

- ▶ 한편, 업무방법서는 법 제2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영위하는 업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시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진흥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문 제 점

- ▶ 보증료는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법정수수료이며, 대부분의 신용보증기관은 보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연체보증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증료 납부의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 ▶ 개정안은 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요율을 진흥원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 유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체보증료의 요율은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보증료 납부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

유관 법령 사례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보증료 등)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 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의2(보증료등)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1조(보증료 등)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 보증료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연체보증료 요율에 대한 내용을 업무방법서가 아닌 시행령에 규정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서민금융법 시행령)

[시행 2022. 6. 7.] [대통령령 제32683호, 2022. 6. 7., 일부개정]

제44조(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연이율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재무 상태 및 신용도
 2.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3. 보증의 종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연이율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③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내지 않은 미납보증료에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사례 0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조업 중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③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④ 건설업 중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평가기준

- ▶ 예측 가능성

현 황

- ▶ 개정안은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도배·실내장식 등 일부 세부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적용토록 규정

문 제 점

- ▶ 간이과세 적용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해 우려
 - 과세의 범위,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업종 관련 규정은 과세 법령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명확하고 국민이 쉽게 예측 가능하도록 정해야 할 필요성이 큼
 - 개정안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업종 및 사업규모를 고시로 정함이 없이 행정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사항을 고시토록 규정
 - 제7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20.] [기획재정부령 제924호, 2022. 7. 20., 일부개정]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국세청장이 사업현황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사례 04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실태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하되,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다.
-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평가기준

- ▶ 예측 가능성

현황

-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3.24.)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대상, 내용(시설 일반현황, 경영활동 현황, 종사자 현황, 운영실태, 이용자 현황 등), 방법·시기,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문제점

- ▶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실시에 대한 사전 통지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대상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

-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에 미리 알려야 하나, 조사실시에 대한 사전 통지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관련 내용 실태조사 시 조사실시에 대한 사전 통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치유농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3호, 2022. 2. 22., 타법개정]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①~② (생략)

-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⑤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사례 0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의2(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①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 총당은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장례절차와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장례 방식은 사망자의 특별한 유언이나 유증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법 제48조제1항의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은 사망 시점의 유류 재산으로 현금, 예·적금, 현금성 자산, 부동산, 귀금속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 당시 사망자의 잔여재산 평가액이 500만원(장례비 사용금액 포함)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사망자의 장례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잔여재산 목록과 장례비 사용내역, 장례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 일체를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함)에 한 차례 이상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잔여재산을 사회복지 시설 등 관련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기준

- ▶ 예측 가능성

현 황

- ▶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는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일반적 절차와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치 않은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 평가액의 합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례비 사용 후 잔액은 공고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귀속하여 사회복지 시설 등에 활용하는 근거 설정

문 제 점

- ▶ 사망한 입소자의 합리적인 장례비와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 평가액이 장례비 사용 후 잔액을 공고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일반적인 절차 및 합리적인 장례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류재산 장례비 사용잔액의 공고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등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저해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사망한 입소자의 처리절차 및 합리적인 장례비 등을 이해관계자 등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등을 이해관계자 등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8.] [보건복지부령 제882호, 2022. 4. 18., 일부개정]

- 제11조(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총당절차) ①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유류물품을 처분한 대금(이하 이 조에서 “유류금”이라 한다)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하려면 장례비용 및 장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복지실시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장례절차에 대하여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유류금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총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복지실시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용 총당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개요

-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평가방법

- ▶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 자격요건의 구체성, 연임제한 규정의 유무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규정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는지 검토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 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이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사례 01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감사원 및 법제처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금융위원회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3.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1인
 5. 기획재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6. 회계 또는 회계감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인
 - 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회계학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 ③ 제2항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36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평가기준

- ▶ 이해충돌 가능성

현 황

- ▶ 공인회계사법 위반, 감사 또는 증명의 중대 착오, 공인회계사회회칙 위반 등의 징계사유 발생 시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직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처분
-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금융위 소속공무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감사원 및 법제처, 금융위, 기획재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공인회계사회 소속 상근부회장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1인임

※ 개정령안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고, 증원한 위원은 공인회계사 경력이나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임

※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등록취소) 및 제2호(2년이하의 직무정지)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 업무를 담당하며,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및 견책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에서 담당

문 제 점

- ▶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심의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이 계속하여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장기간 직무 수행으로 인한 유착관계 형성 및 이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심의·의결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우려
- ▶ 현 시행령은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제척 및 기피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회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척 및 기피 등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정비 필요
- ▶ 또한,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행위 등의 원인으로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위원직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 부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장기간 직무수행으로 인한 유착관계 및 이해충돌 사전방지를 위해 위원(위촉직)의 연임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제척 등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회피규정 신설
- ▶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회피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관련 비위행위 등으로 인하여 심의 등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에 대한 지명철회 또는 해촉 규정 신설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2600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의2(위원의 지명 철회 또는 해촉) ①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사례 02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3조(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평가기준

-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민간 중심의 자문기구로 개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등 법령 정비

문제점

- ▶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부재
 -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관한 사항, 추진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중장기 전략 변경과 추진과제 보완 등 중장기 재정 전략의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
 - 위와 같이 중요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해 위원으로 참여할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시행 2021. 4. 27.] [대통령령 제31644호, 2021. 4. 27., 전부개정]

-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경제, 사회등 분야의 중장기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례 0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배우자 또는 친족 관계이거나 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평가기준

-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 제정안은 해직공무원등의 심의·결정과 복직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특별법이 정한 해직기간 일부 경력인정 및 연금 특례 등이 법 규정 취지에 따라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 제 점

- ▶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심의 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심의·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배제를 위한 회피·해촉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 위촉된 위원 등이 심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관련 안건 등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 및 안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피신청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에 따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심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강화
 - 제척, 기피 규정 신설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

[시행 2021. 4. 13.] [대통령령 제31620호, 2021. 4. 13., 제정]

제31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그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그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결정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사례 0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기준

-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제정|이유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7412호, 2021. 6. 10.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의 위탁,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비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 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을 근거로 시행령 제5조에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문 제 점

- ▶ 분과위원회 위원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이해충돌 가능성 존재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둘 수 있는 본 위원회의 하부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문화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유사법령과 비교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권자를 위원장으로 변경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17호, 2021. 6. 1., 제정]

-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역사 문화권별로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례 05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20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 ⑦ (생략)

제27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생략)

- ② 설치·운영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 ③ ~ ⑤ (생략)

평가기준

- ▶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제정|이유

-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7423호, 2021. 6. 10. 시행)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범위, 설치·운영기관 선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 제정안은 제20조 및 별표2 에서 주변영향지역 조사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사용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 제27조에서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해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활동범위 등을 규정하며, 설치·운영기관에게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문 제 점

- ▶ 주민협의체 위원의 장기적인 연임으로 인한 부패발생 가능성 존재
 - 주민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 조사를 위한 연구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사용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특정 위원이 장기적으로 연임할 경우, 부패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등 문제점 발생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당연 해촉사유에 해당됨에도 이를 임의적 해촉사유로 규정
 - 주민감시요원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고, 설치·운영 기관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나,
 - 중대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설치·운영기관에게 해촉여부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여, 해촉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존재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주민협의체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명시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당연 해촉사유로 규정

[별표 2]

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 (제14조제1항 관련)

1. ~ 2. (생략)
3. 주민협의체 위원 임기
주민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별표 4]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및 인원 (제19조제1항 관련)

1.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 가. 주민감시요원은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이 위촉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 나.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3) 및 4)의 경우에는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해야 한다.
 -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3)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 5) 관리시설설치·운영기관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 6)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7) 주민감시요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생략)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개요

-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평가

평가방법

- ▶ 관련 부패사례 검토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 ▶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부패방지 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 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 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사례 0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평가대상 조문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평가기준

-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황

- ▶ 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
- ▶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하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기준)
 -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관련분야 교수 및 수자원 분야 10년 이상의 연구·실무 경험이 있는 민간인 중에서 위촉

국가·지역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구성 기준(법률 제29조·제32조)

구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관사항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
위원정수	총 50명 이내	총 30명 이내
위원장	국토교통부차관	시·도 소속 3급이상 공무원 중 지사가 지명
위원	(공무원) 행정기관 공무원, 판·검사 (민간인) 변호사, 하천·환경공학 등 조교수 이상, 관련분야 연구· 실무경력 10년 이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기준 준용

국가·지역 수자원 관리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구분	내용
법률 제29조 . 시행령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문 제 점

- ▶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관련 규정 부재
 - 국가·지역의 수자원 관리와 관련분쟁 등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시, 민간위원의 공정한 직무윤리를 담보할 수 있는 부패방지장치 마련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규정 마련
 - 업무상 비밀 누설, 뇌물수수 등 범죄행위 시 공무원과 동일한 「형법」상의 형사처벌 부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12.12.31.)

-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수자원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제32조 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2017년 평가 사례임

사례 0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진상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평가기준

-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현황

- ▶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제정령안은 포항지진의 발생원인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

문제점

- ▶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직을 유지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해촉 규정 등 부패통제장치 부재 - 이에,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위원에게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규정 마련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6. 25.] [대통령령 제31828호, 2021. 6. 25., 일부개정]

제4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職)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5조(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하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2020년 평가 사례임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개요

- ▶ 급변하는 행정환경으로 인해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법령 등에 내재하는 소극행정 유발 요인을 이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 ▶ 법령상 근거 부재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적극행정 운용규정」 제2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

평가방법

- ▶ 법령상 근거 부재로 인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토
 - 평가대상 법령의 상·하위 법령을 검토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음에도 하위 법령에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상 근거 부재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업무해태, 자신 또는 소속기관만을 위한 자의적인 업무처리 등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 소극행정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도입 검토
 - 처리기한 규정, 민간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등 공무원의 업무해태 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의 반복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또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평가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상의 근거 부재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등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가?	
□ 불명확하게 규정된 법령상 각종 요건 등으로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처리하는 등의 행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자신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또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례 0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법 제36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의 제공
 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3.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
-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평가기준

-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현 황

- ▶ 기업 간 물류 중심의 전통물류와 다른 다양한 택배,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육상 화물운송에 관한 유일한 제도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운송·중개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 이에 따라 운송을 위한 차량뿐만 아니라 물품의 신속한 분류·배송을 위한 정보망, 시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되는 택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새로이 규율할 필요가 있고,

- ▶ 이륜자동차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산업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종사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시행됨(법률 제17911호, 2021.1.26. 제정, 2021.7.27.시행)에 따라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 제 점

- ▶ 법 제36조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안에는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법령의 근거 부재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일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법률 위임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구체화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시행 2021. 7. 27.] [대통령령 제31923호, 2021. 7. 27., 제정]

제34조(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업무수행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례 02 철도안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제64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 마. (생략)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코. (생략)				
토.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2조제1항 제18호	300	600	900

평가기준

-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현황

- ▶ 철도안전법 개정('20.12.22. 공포, '20.6.23.시행)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7조제3항 및 제82조제2항제8호의2 신설)

- ▶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6]에 따라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

문 제 점

-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이 개정령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게 되면 기업, 국민 등 법 적용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 ▶ 근거 법령 부재로 인한 공무원의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 위원회는 '20년부터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권의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 손실 발생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극행정발생 가능성'을 부패영향평가 세부기준으로 신설하여 평가하고 있음
- ▶ 법률 개정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개정령안은 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철도운영자의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마.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허. (생략)				
고. 법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5항제2호	15	30	45
노. <u>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경우</u>	법 제82조 제2항제8조의2	150	300	450
도. ~ 호. (생략)				

사례 0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5조의4(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제15조의4 관련)

1. ~ 5. (생략)
6.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7. (생략)

※ 비고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평가기준

-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현황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2020. 12. 22. 개정,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개정령안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 심사 시 장애인 단체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하고, 국가·지자체 등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여객시설에 무역항 외에 연안항이 추가됨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개정 내용 관련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18.12.7.)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중 관련 내용

- 공급자(행정기관) 중심의 기준적합성 심사제도를 이용자 참여가 가능한 심사제도로 변경
-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문 제 점

- ▶ 법률 개정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3호의 연안항이 ‘여객시설’에 포함되어 개정령안 제11조 및 이에 따른 [별표 1]은 “(고정건축물이 있는)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5호 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을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추가

※ 여객이용시설 :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등

※ 항만친수시설 :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문화·교육시설, 해양공원 시설 등

- ▶ 그러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령안 제15조의4 및 [별표 1의2]의 6호는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에 설치된 항만시설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연안항에 설치된 항만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연안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연 500만 여명)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음

【 무역항과 연안항 이용 여객 현황 】

(단위 : 명)

구 분	항명	2019년 이용객 수			평균 이용객 수 (최근 5년 기준)		
		내항여객선	외항여객선	계	내항여객선	외항여객선	계
무 역 항	인천항 등 13개 무역항	7,096,277	2,969,431	10,065,708	7,513,561	2,813,428	10,063,689
연 안 항	녹동신항 등 21개 연안항	4,680,611	-	4,680,611	4,993,137	-	4,993,137
	계	11,776,888	2,969,431	14,746,319	12,506,698	2,813,428	15,056,826

주) 이용객 통계는 해운조합 전산매표시스템상 입항+출항의 합이며, 전산매표 시스템상의 실제 매표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소극행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 보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 시설에 연안항 추가

개선결과

-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1.] [대통령령 제31818호, 2021. 6. 22., 일부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제11조 관련)

1. 교통수단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바. 광역철도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2. 여객시설

-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 아. 광역철도의 역사

3. 도로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사례 0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가대상 조문

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이행 등)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표금융회사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 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9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수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보완 명령을 받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제18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⑤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생략)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기준

- ▶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현황

- ▶ 해당 제정령안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이루어지는 금융업권별 감독만으로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출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 위험에 관한 사항까지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둘 이상의 금융회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내 내부통제·위험관리 및 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검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법률 제17800호, '20.12.29. 제정, '21.6.3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부칙을 제외한 해당 제정령안의 조문은 총 25조이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별표]로 구성

- ▶ 제정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자본적정성 평가 또는 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을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 제출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
- ▶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보완, 건전경영 지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유예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 관련 법 조문

제22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제 점

- ▶ 법률에서는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임하면서, “단기간에 기준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혹은 “기간을 정하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 등의 입장에서는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유예기간 등을 전적으로 금융위의 판단과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의 유예규정

	유예 요건	위임	시행령제정안
경영개선계획 제출 유예	일시적으로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 제22조 제4항)	(규정 없음)
경영개선계획 미제출· 불이행에 대한 조치 유예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 제23조 제3항)	(규정 없음)

- ▶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동법 제19조는 ‘적기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이 규제 수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게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권고·요구·명령하는 조치임. 이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10조제3항)

※ 다만,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하위법령 위임규정은 없음

- ▶ 한편, 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및 하위법령 등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는 적기시정조치 유예와 관련한 세부내용(기간, 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제5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적기시정조치 대상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자본 확충,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내에 금산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가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감안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제1호 전단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경우 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제49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소관 기존 타 법의 유예규정에 대한 외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고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는 점, 더욱이 기존 타 법과는 달리 법률에서 유예에 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유예 '기간'에 대한 내용이라도 제정령안에 규정할 필요

검토결과 : 개선권고

- ▶ 법률에서 위임한 '유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위법령 보완

개선결과

▶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법령 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타법개정]

제1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16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제출기한은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0일부터 60일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1. 제출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표금융회사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입증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개선

2. 자본의 중복이용의 축소

3. 위험부담의 축소

4. 이익배당의 축소 또는 제한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명령을 유예한 경우 그 사유 및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대표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제23조제1항제1호의 조치: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또는 수정·보완 시기와 수정·보완 사항(수정·보완을 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제23조제1항제2호의 조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기간, 이행 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조치: 조치 기한 및 조치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에 대한 조치 유예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및 그 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III

2021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2021

참고 자료



1.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212
2. 관련 법령	227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¹⁾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 기간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예측가능성)	
신청 서류 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예측가능성)	

1)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 · 감독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 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특혜발생 가능성)	

2 부과·징수 업무²⁾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과태료, 과징금, 영업 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예측가능성)	
가중 · 감면	<input type="checkbox"/>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이의 · 제기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 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2)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환급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가능성)	
체납 처분	□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3 보조·지원 업무³⁾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 선정	<input type="checkbox"/>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공개성)	
관리 · 감독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수혜 자격 배제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을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⁴⁾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3) 보조·출자·출연·용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4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input type="checkbox"/>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관리 · 감독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준수부담의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5 행정조사 업무⁵⁾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⁶⁾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input type="checkbox"/>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 의무 등의 규정 확인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 ⁷⁾ (공개성)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5)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도 있음

6)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7)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input type="checkbox"/> 연고·운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 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6 단속·점검 업무⁸⁾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예측 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성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8)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input type="checkbox"/>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 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이해충돌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해충돌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인가? (이해충돌 가능성)	
임기 및 신분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이해충돌 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해충돌 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제척·기피·회피	<input type="checkbox"/>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해충돌 가능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input type="checkbox"/>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공개성)	
	<input type="checkbox"/>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공개성)	

8 인사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이해충돌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 임용	<input type="checkbox"/>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공개성) 	
기관장 재량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공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기타	<input type="checkbox"/>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관련 법령

2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률	시행령
<p>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p> <p>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부규정 <p>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패유발의 가능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법 률	시 행 령
	<p>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p> <p>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p> <p>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p> <p>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p>

법 률	시 행 령
	<p>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p> <p>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p>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정 2008. 0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호
 개정 2010. 04. 0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4호
 개정 2011. 10. 0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45호
 개정 2012. 10. 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53호
 개정 2013. 06. 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58호
 개정 2015. 01. 0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72호
 개정 2015. 03. 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75호
 개정 2015. 11. 1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90호
 개정 2019. 10. 0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81호
 개정 2020. 05. 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11호
 개정 2020. 09. 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1호
 개정 2020. 11. 0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9호
 개정 2022. 04. 29.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2.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법령안"이라 한다)
2.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훈령·예규·고시·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사유·정관 등 내부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4.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유·정관 등(제정이나 개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부규정(이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2(평가대상 제외법령 등) ① 제·개정 법령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이하 "제외법령"이라 한다)에 해당 되더라도 필요시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
 2. 국가보안, 예비군·민방위, 국토·통일, 국호·국기·연호, 전례·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령
 4.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령
 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 ② 위원회는 제외법령의 시의성 제고 및 정책 환경 변화 등 제외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외법령을 지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제외법령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④ 위원회는 제외법령에 대한 평가의뢰를 받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임을 평가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 처리 절차

제1절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5조(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 개정 법령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처전담제 실시) ①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별로 각 소관기관을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 문서수신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평가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자료·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기관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 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대상 법령의 상위 근거 법령, 평가 대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조례 등 하위 법령 및 관련·유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제8조(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문 의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소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 사항"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는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는다.
- ③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 ④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 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 ⑥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⑦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 ③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 ④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①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연 1회 이상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 조치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소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요사항인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3조(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내부규정(이하 "현행 법령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소관 기관(이하 "소관 기관"이라 한다)에 현행 법령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소관 기관이 작성·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 ④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등에 대한 기초자료·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의2(현행 법령등 부패영향평가) 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4.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당해 또는 관련 현행 법령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등) 현행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의 보완·평가서 작성 및 자문 의뢰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료 제출요구·실태조사 등) ① 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 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평가담당자는 법령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 ①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안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소관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다만 제13조의2제4호에 해당하여 제·개정 법령안과 함께 현행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개선권고 통보 및 재평가 등) ①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권고를 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절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9조(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20조(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행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부패영향평가 자문

제21조(자문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31조 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자문 의뢰) ① 평가담당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구에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문 방식)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 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에 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자문 수당) 평가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한 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문서·자료 및 역량 관리

제26조(문서 관리)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년도 및 일련번호 등을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 문서가 접수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생산되는 일련의 평가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7조(부패실태자료 수집·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공직자 종합자료통계 및 위원회 신고심사 실적 등 부패실태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28조(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 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에 관련된 접수내용, 자문현황, 평가결과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8조의2(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 ① 위원회는 평가담당자의 평가기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호, 2008. 4. 17.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6호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6호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행한 부패영향평가업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이하 부칙 생략)

2021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2021 Corruption Risk Assessment Casebook

발행일 : 2022. 12.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편 집 :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Tel. 044-200-766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우편번호 30102)

※ 부패영향평가 관련 문의 및 개선 건의는 위 전화번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